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23

발의연월일: 2024. 7. 5.

발 의 자: 김도읍・이헌승・구자근

신동욱 • 조지연 • 서지영

곽규택 · 김희정 · 김정재

권영세 · 장동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소송계속 중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앞으로는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장애인학대관련범 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과 법원이 보 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등의 열람·등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409호)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 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 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 정되어야 할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15제2항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 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59조의17부터 제59조의19까지를 각각 제59조의18부터 제59조의20까지로 하고, 제59조의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17(「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장애인학 대관련범죄에 대한 형사절차에 관하여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 및 제8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강 력범죄"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17의 개정 규정 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4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사건 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호사의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4항을 준용하는 종전의 제59조의15제2항에 따라 변호사가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59조의15제2항 및 제59조의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9조의15제2항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15(피해장애인에 대한 변	제59조의15(피해장애인에 대한 변
호사 선임의 특례) ① (생 략)	호사 선임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하	②
여는 <u>「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u>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부	관한 특례법」 제8조의5제2항
<u>터 제6항까지를</u> 준용한다.	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u><신 설></u>	제59조의17(「특정강력범죄의 처
	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장
	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한 형사
	절차에 관하여는 「특정강력범
	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
	조의3 및 제8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강력범죄"는 "장
	애인학대관련범죄"로 본다.
<u>제59조의17</u> ~ <u>제59조의19</u> (생	<u>제59조의18</u> ~ <u>제59조의20</u> (현행
략)	제59조의17부터 제59조의19까
	지와 같음)